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01)

일 시: 2015년 03월 12일 (목) 오후 03:00
장 소: 백주년기념관 2층 소회의실
참 석 자: 이경순(위원장), 신숙(서기), 고원배, 남상용, 박세화, 송영천, 신승복, 이규일, 이영주, 정훈, 조양현, 최순남, 양초롱 (가나다순)
첫 기 도: 조양현

연위 15-01-01. 직전 회의록

직전회의록(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2014-01)을 승인함

연위 15-01-02.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승인함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 1부

연위 15-01-03.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을 승인함

붙임: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1부

끝기도 : 최순남

의 장 이 경 순

서 기 신

숙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안전 (01)

일 사: 2014년 06월 23일 (월) 오후 03:00
 장 소: 백주년기념관 2층 소회의실
 참석자: 이경순(위원장), 신숙(서기), 고장혁, 류수현, 신승복, 유구용, 전우민, 황윤정, 홍일진(가나다순)
 첫 기 도: 유구용

연위 14-01-01. 직전 회의록

직전회의록(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2013-01)을 승인함

연위 14-01-02. 연구실 안전점검 위탁을 승인함

이유: 연안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 장소: 제1, 2, 3과학관 및 제1,2실습관 등 연구실 (102개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 위탁업체: 누리&소방 4,400,000원 (부가세 포함)

연위 14-01-03. 안전관리규정 개정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결의함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③위원은 공통실험실조정위원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자원학전공교수, 동물생명공학전공교수,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담당자 이상 13명으로 한다.	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③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자원학전공교수,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담당자, 공통기기실험실 조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 이상 14명으로 한다.	제5조의 3항 변경

연위 14-01-04.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 전임 및 비전임 교원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끝기도 : 전우민

의 장 이 경 순

서 기 신

숙 신숙

연구실안전관리규정(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조 (용어의 정의)</p> <p>①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습실, 실험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p> <p>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학과(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근무자를 말한다.</p> <p>③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p> <p>④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p> <p>⑤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 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⑥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p> <p>⑦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 및 액체 폐 기물(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p>	<p>제3조 (용어의 정의)</p> <p>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p> <p>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p> <p>③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p> <p>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p> <p>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 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p>	<p>제3조의 변경 및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조 (용어의 정의)</p> <p>⑧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제3조 (용어의 정의)</p> <p>⑩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p> <p>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중 사자가 부상·질병·진염·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의 변경 및 신설</p>
<p>제4조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p> <p>① 안전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자’라 한다)는 본교 총장으로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p> <p>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자를 보좌하여 대학교의 종합적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3.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p>제4조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p> <p>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 총괄자를 연구주체의 장으로 모두 변경</p> <p>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3.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p>8. 삭제</p>	<p>제4조의 1항 변경, 2항 1 변경, 4항 2 변경 및 8삭제</p>
<p>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p> <p>③ 위원은 공통기실현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 공통기실현실실 조교(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4명(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p>	<p>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p> <p>③ 위원은 공통기실현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에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4명(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p>	<p>제5조 3항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6조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명)</p> <p>① 총괄자는 연구실 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한다.</p> <p>②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 2인을 둔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은 해당 연구실의 책임자(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되며, 안전관리담당자 “부”는 연구활동종사자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한다.</p>	<p>제6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p> <p>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제6조 변경
<p>제7조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감독 2. 담당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3.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에 대한 사항을 총괄자에게 보고 4. 실험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 의뢰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p>제7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p> <p>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p>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 책임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제7조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1조 (교육·훈련 등)</p> <p>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p>	<p>제11조 (교육·훈련 등)</p> <p>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초작업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여야한다.</p>	제11조 5항 변경
<p>제14조 (사고대처 및 조사의 실시 등)</p> <p>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한다.</p>	<p>제14조 (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p> <p>① 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 ②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대로 보존한다. ③ 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⑥ 사고의 원인구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p>	제14조 변경
<p>제15조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p> <p>① 위험성이 있는 장비·기구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입구에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 ② 연구실마다 '연구실안전관리규정' 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비치하고 '비상연락망' 과 '위험물질배치도' 를 부착한다.</p>	<p>제15조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p> <p>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p>	제15조 변경

<별표 제2호>

연구실 안전사고 대응 메뉴얼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삼 육 대 학 교

1.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조직

재난구분(연구실)	교내	교외	비고
화재/폭발	방화관리자(시설과장), 연구실안전 환경관리자	노원소방서	
가스누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기관팀	노원소방서	
환경오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시설과 기관팀	환경부, 노원구청	
화학약품 누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노원소방서	
각종 안전사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총무과, 시설과, 관리과		

2. 안전사고 관련 조직 및 비상연락망

부 서	구 분	연락처	비고
시설과	과장	3460	소방안전 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3468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기관팀장	3490	가스안전관리자
	전기팀장	3477	전기안전관리자
총무과	총무부장	3450	
관리과	경비팀장	3501	

3. 안전사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법

3.1. 화학약품 누출 사고 발생시

단 계	구 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발생	- 연구실내 다량의 화학약품 누출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상황전파	- 화학약품 누출자 또는 발견자는 즉시 피난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시설과에 알린다. - 대형사고일 경우 긴급 대피하고 119에 연락한다. [사고발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시설과]→[사무처장]→[총장] ↓ [119 상황실]
3단계	대응	- 건물내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 적절한 안전보호구(안경, 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누출자 또는 학과관계자(교수, 조교, 학생)는 먼저 누출된 약품의 종류, 유출량, 예상유출경로, 오염정도 등을 신속히 파악한다. - 누출약품의 인화성, 반응성, 독성 등을 확인한다. - 다른 성질의 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화학약품이 누출되고 있는 배관시설의 밸브를 잠거나 관련시설의 가동을 중단한다. - 약품의 성질에 따라 중화하거나 독성을 없앤다. - 비상기구함 등에 있는 화학약품 전용 흡수제로 화학약품을 제거/처리한다.
4단계	사고원인 및 피해 조사	-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중대사고 발생시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에 보고한다.
5단계	복구 및 예방	- 복구는 시설과와 관리과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오염된 흡수제 등은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소각한다. - 누출지역에 모래나 톱밥 등을 이용하여 화학약품이 잔존하지 않도록 복구한다. - 시설팀에서는 누출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 동종 사고를 예방한다.

3.2. 가스 누출 사고 발생시

단 계	구 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발생	- 연구실내 가스 누출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상황전파	- 가스 누출자 또는 발견자는 즉시 피난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및 기관팀에 알린다. - 대형사고일 경우 긴급 대피하고 119에 연락한다. [사고발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기관팀]→[사무처장]→[총장] ↓ [119 상황실]
3단계	대응	- 건물내 모든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시킨다. - 적절한 안전보호구(안경, 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누출자 또는 학과관계자(교수, 조교, 학생)는 먼저 누출된 가스의 종류, 유출량, 예상유출경로, 오염정도 등을 신속히 파악한다. - 누출가스의 인화성, 반응성, 독성 등을 확인한다. -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배관시설의 밸브를 잠거거나 관련시설의 가동을 중단한다. - 자연배기시설을 이용하여 실내를 환기시킨다.
4단계	사고원인 및 피해 조사	-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중대사고 발생시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에 보고한다.
5단계	복구 및 예방	- 복구는 시설과와 관리과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시설팀에서는 누출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 동종 사고를 예방한다.

3.3. 화재 사고 발생시

단 계	구 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발생	- 연구실내 화재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상황전파	- 화재 발견자는 큰소리로 주위에 알리고 비상경보 벨을 눌러 화재발생을 주위에 알린다. - 발견자는 즉시 대피하고 119에 연락한다. [사고발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시설과]→[사무처장]→[총장] ↓ [119 상황실]
3단계	대응	- 건물내 모든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 화재발생구역에 있는 화학약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소방관에 알린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학과관계자(교수, 조교, 학생)는 먼저 발생한 화재의 종류를 파악한다. - 주변의 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4단계	사고원인 및 피해 조사	-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중대사고 발생시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에 보고한다.
5단계	복구 및 예방	- 복구는 시설과와 관리과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발생한 화재/화학약품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소각한다. - 시설팀에서는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 동종 사고를 예방한다.

3.4. 유독물질 중독 사고 발생시

단 계	구 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발생	- 연구실내 유독물질 중독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상황전파	- 유해물질 중독자 또는 발견자는 즉시 대피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시설과에 알린다. - 대형사고일 경우 119에 연락한다. [사고발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시설과]→[사무처장]→[총장] ↓ [119 상황실]
3단계	대응	- 환자를 사고현을 피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킨다. - 사고발생구역내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 환자의 호흡상태 등의 바이탈을 확인하고 호흡이 곤란하면 비상기구함의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킨다. - 환자를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학과관계자(교수, 조교, 학생)는 발생한 유독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한다. - 유독물질 누출/화재 등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4단계	사고원인 및 피해 조사	-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중대사고 발생시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에 보고한다.
5단계	복구 및 예방	- 복구는 시설과와 관리과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발생한 화재/화학약품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소각한다. - 시설팀에서는 유독물질 중독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 동종 사고를 예방한다.

3.5.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출 사고 발생시

단 계	구 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발생	- 연구실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출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상황전파	-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출 발견자는 즉시 대피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시설과에 알린다. -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119에 연락한다. [사고발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시설과]→[사무처장]→[총장] ↓ [119 상황실]
3단계	대응	- 유출 구역의 접근을 통제한다. - 유출상황을 전파하고 사고구역에서 대피한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학과관계자(교수, 조교, 학생)는 유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와 양을 파악한다. - 사고구역에 경고표지판을 부착한다. - 사고구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4단계	사고원인 및 피해 조사	-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비상상황 일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에 보고한다.
5단계	복구 및 예방	- 복구는 시설과와 관리과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시설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 동종 사고를 예방한다.

삼육대학교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No.	학과	건물명	연구실/실험실	호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1	공통과학기기실	제1과학관	공통실험실-I	106	신숙	양초롱
2		제2과학관	공통과학기기실-II	302	신숙	양초롱
3	식품영양학과	제1과학관	조리실습실	지하	최순남	김도욱
4			단체급식실습실	지하	최순남	김도욱
5			영양생화학실험실	107	최경순	김도욱
6			식품영양학실험실	108	최경순	김도욱
7	화학과	제1과학관	LabView	B101	고원배	박홍렬
8			분석화학연구실	208	유구용	김충현
9			물리환경화학연구실	209	이동섭	김영윤
10			무기유기화학연구실	210	박명환	양수정
11			유기화학연구실	211	박두한	김영윤
12			무기화학연구실	212	고원배	김재진
13			분석물리화학연구실	213	유구용	박홍렬
14			고분자화학연구실	214	김남정	박홍렬
15			일반화학실험실	215	이성언	김충현
16			일반물리화학실험실	310	박명환	양수정
17			기초의약과학과		분자생물학실험실	311
18	동물생명공학과	제2과학관	동물번식학실험실	201	이상진	최도현
19			동물유전자원연구센터	202	이상진	김지연
20			발생공학연구실	204	이상진	홍선화
21			사료영양분석실험실	208	이상진	조용일
22		실험동물센터	실험동물센터	단층	이상진	조용일
23	동물자원학과	제2과학관	응용동물학과실험실	206-1	한경식	정태환
24			분자미생물학및영양유전체학실험실	206-2	한경식	정태환
25			유가공학실험실	207	전우민	황지은
26		제1과학관	동물사육연구실	308	정훈	한얼
27		행동과학연구실	309	정훈	한얼	
28	생명과학과	에스라관	생명과학과표본실	B101/4	신숙	김동환
29		제2과학관	일반생물학실험실	301	황윤정	강종혁
30			제1실험실	401	황윤정	강종혁
31			대학원실험실	402	황윤정	강종혁
32			제1연구실	408	김현희	김지영
33			제2연구실	408-2	황윤정	프랭크린
34			제4연구실	409-1	신숙	김동환
35	약학과	제3과학관	천연물리화학연구실	305	임동술	이바울
36			공통실험실-1	306	송영천	강민영
37			공통실험실-2	307	송영천	강민영
38			공통실험실-3	311	송영천	강민영
39			공통실험실-4	312	송영천	강민영
40			실습약국	310	송영천	강민영
41			임상약학연구실	313	강태진	이기만
42			생약학연구실	314	임동술	이바울
43			SPF동물실	4층	김경제	이영주
44			생화학연구실	405	김경제	이영주
45			약제학연구실	406	박준범	김정미
46			병태생리학연구실	407	강태진	이기만
47			면역학연구실	408	김경제	이영주
48			세포배양실	409	김경제	이영주
49			표본실	411	임동술	강민영
50			미생물연구실	412	최성숙	원상범
51			공통기기실	415	박일호	박선혜
52			약품분석화학연구실	416	박일호	박선혜
53			생물약제학연구실	417	강진양	김정미
54			예방약학연구실	418	최성숙	원상범
55	제1과학관	위드바이오	109	강진양	김정미	
56		약물학실험실	314	정재훈	브라이언	

No.	학과	건물명	연구실/실험실	호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57	원예학과	제2과학관	잔디토양분석실	308	김경남	김재성		
58		온실	식물생리학실험실	204	남상용	소순일		
59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제2과학관	실험실습실	506	류병열	신상은		
60	카메라트로닉스학과	제1실습관	자동차구조엔진실습실	101	류한철	정기언		
61			역학실험실	104	최선순	정기언		
62			중합제작실	106	류한철	정기언		
63			차체실습실	107	류한철	정기언		
64	물리치료학과	제2과학관	수치료실	101	임중은	조성래		
65		제3과학관	시뮬레이션실	102	임중은	조성래		
66			신경물리치료실습실	103	임중은	조성래		
67			기본물리치료실험실	104	임중은	조성래		
68			대학원공동실험실	106	임중은	조성래		
69			대학원연구실	107	임중은	조성래		
70			노인물리치료실험실	108	임중은	조성래		
71			근전도 및 보행 분석실	109	임중은	조성래		
72			생역학실험실	110	임중은	조성래		
73			심폐 및 TMJ 실험실	117	임중은	조성래		
74			근골격물리치료실습실	118	임중은	조성래		
75			간호학과	제3과학관	기본간호학실습실/기초과학실	212~4	정현철	이가현
76					시뮬레이션학습실1(모성간호)	215	김일옥	임영숙
77					시뮬레이션학습실2(성인간호)	216	신성례	임영숙
78	시뮬레이션학습실3(아동간호)	217			김일옥	임영숙		
79	건축학과	건축실습관	건축노작실습실	단층	이규일	박지명		
80		제2실습관	건축설계준비실	201	이규일	박지명		
81			건축설계스튜디오 I	208	이규일	박지명		
82			건축설계스튜디오II	209	이규일	박지명		
83			건축설계스튜디오III	210	이규일	박지명		
84			건축설계스튜디오IV	211	이규일	박지명		
85			건축설계스튜디오V	212	이규일	박지명		
86			건축설계스튜디오VI	213	이규일	박지명		
87			건축설계스튜디오VII	214	이규일	박지명		
88			건축모형실	215	이규일	박지명		
89			건축자율설기실	216	이규일	박지명		
90			건축재료시험실	110	이규일	박지명		
91			건축설계스튜디오VIII	111	이규일	박지명		
92			건축설계스튜디오IV	111-2	이규일	박지명		
93	컴퓨터학부	제1실습관	프로그래밍실습실	402	김현규	유보경		
94			임베디드실습실	403	김현규	유보경		
95			프로젝트실습실	404	김현규	유보경		
96			멀티미디어실습실	410	김현규	유보경		
97			네트워크실습실	411	김현규	유보경		
98	보건학과	에스라관	보건정책연구실	310	천성수	유경이		
99			보건교육연구실	311	손애리	김진영		
100			운동보건연구실	312	유재현	이순희		
101			전공실습실/실험실습실	314	유재현	이혜림		